

부다페스트條約 그것은 무엇

우리나라의 條約加入에 앞서 그 쏠 를

우리나라도 年內에 부다페스트條約에 加入한다. 特許廳에 의하면 微生物관련 發明의 特許出願에 따른 微生物寄託을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特許節次를 위한 微生物寄託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에 加入키로 했다.

特許廳은 이에 따라 부다페스트條約加入에 따른 사전실무작업

을 빠른 時日내 마무리지어 外務部에 이첩할 예정인데 外務部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 사무총장에게 加入書를 寄託하면 3개월후에 發效하도록 되어있다.

부다페스트條約에 加入할 경우 지금까지 微生物寄託을 요구하는 모든 나라에 特許出願上 이를 이용한 微生物을 寄託해야 했기때

문에 微生物의 多重寄託 및 그에 따른 과도한 경비지출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特許出願時 國際寄託機關에 단 1회 寄託함으로써 다른 條約國에는 寄託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즉, 締約國 상호간에는 自國의 特許節次上 國際寄託機關에 최초 단 1회 寄託한 사실에 의하여 特許明細書에 기재된 寄託사실·寄

I. 부다페스트條約이란

부다페스트條約이란

무엇인가?

부다페스트條約의 정식명칭은 特許절차를 위한 微生物寄託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으로 되어있다.

이條約은 微生物 관련 發明을 特許를 出願함에 있어서 微生物寄託의 상호승인에 관한 국가간의 協約이다.

이條約은 1977년 4월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作成되어 당시 18個國이 서명하였으며, 총 20개條約文과 同條約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15個條로 구성되어 있고, 그주요 내용은 條約國이 되기위한 절차, 微生物寄託의 국제적승인과 효과, 國際寄託機關(IDA)의 승인, 微生

物寄託과 분양 절차등으로 되어있다.

特許節次上 微生物 寄託에 있어서 부다페스트條約의 機能은?

이條約의 目的은 微生物관련 發明의 特許出願을 하는 경우 微生物寄託을 단 1회로 간소화 하자는데 있다.

이條約에 加入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는 微生物 寄託을 요구하는 모든 나라에 特許出願上 이용한 微生物을 寄託해야하므로 微生物의 다중기탁 및 그에 따른 과도한 소요경비 지출 등의 불편이 있으나, 본條約의 加入國국민의 경우는 최초 特許出願時에 國際寄託機關에 단 1회 寄託함으로써 다른 條約國에는 寄託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締約國 상호간에는 同條約 3條에 의거 自國의 特許節次上, 國際寄託機關에 최초 단 1회 寄託한 사실에 의하여 特許明細書에 기재된 寄託事實, 寄託날짜의 승인 그리고 國際寄託機關이 분양한 微生物의 시료는 당해 特許出願上의 微生物 시료임을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條約의 締約國 상호간에는 이條約 및 規則에 규정한 사항과 상이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요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條約加入前과 加入後의

微生物寄託 節次는?

이條約 加入으로 인해 特許出願에 있어서 微生物 寄託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점을 加入前과 加入後로 나누어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인가 분석한다

· 託날짜의 승인, 그리고 國際寄託機關이 분양한 微生物의 시료는 당해 特許出願상의 微生物시료임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條約의 加入을 앞두고 그 전모를 分析·紹介한다.

〈編輯者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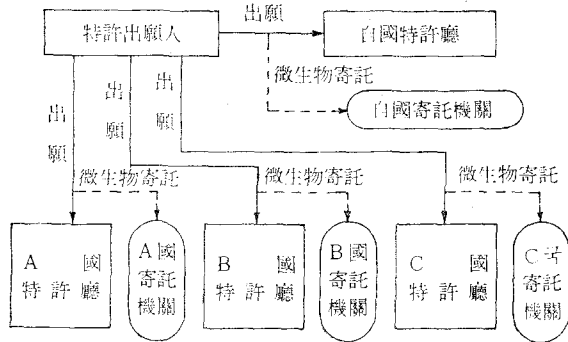
條約의 加入國은?

이 條約은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 외교회의에서 作成되어 그 해 말 18國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980년 8월 19일자로 發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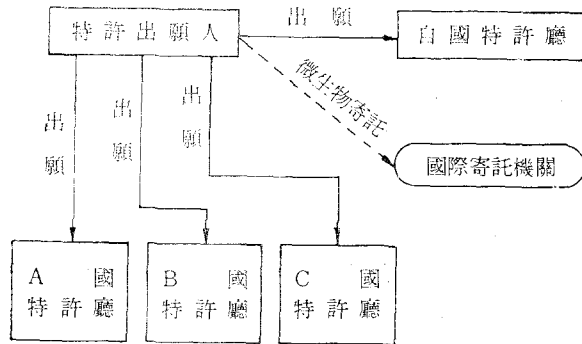
1986년 12월 말 현재 이 條約에 대한 비준서 또는 加入書를 寄託한 나라로서 效力이 발생한 締約國은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프랑스, 서독, 헝가리, 일본,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소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태리 등 19國으로 되어있다.

파리協約의 同盟國은 이 條約에 加入할 수 있으며 서명국은 비준서를, 비서명국은 加入書를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사무총장에게 寄託하면 寄託후 3개월 후에 發效하도록 되어 있다.

條約加入前の 微生物 寄託경로



條約加入後の 微生物 寄託경로



II. 微生物寄託制度는 왜 必要한가

特許節次上的 微生物은?

生物體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動物, 植物 그리고 微生物이 그것이다. 動物과 植物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가능한 다세포 生命體이나 微生物은 현미경과 같은 특수한 기구의 도움없이 식별이 곤란한 세균·곰팡이·효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미세한 生命體를 뜻한다.

特許節次上 微生物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微生物로 분류되는 세균·곰팡이·효모·바이러스·원생동물·조류 등과 이에 부가하여 動物·植物세포주, 잡종세포(하이브리도마) 등도 포함해서 통칭하고 있다.

寄託이란 무엇이며 特許出願에 있어서 微生物은 왜 寄託을 하나?

寄託은 微生物의 保護管理를 微生物 수집보관소 즉, 제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말하며, 또 寄託된 微生物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할 때 이를 분양하는 기능을 갖는 기관이 寄託機關이다.

生命體를 이용하지 않는 化學物質, 機械裝置 등 發明의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特許要件으로서 發明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 이용성을 갖추고 있으면 特許가 가능하다.

그러나 微生物을 이용하여 化學物質, 醫藥, 食品등을 製造하거나 적극적으로 微生物 등 生命體를 생산하는 發明의 特許를 出願함에 있어

어서는 상기 特許要件 중 發明의 산업적 이용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發明이 완성되어 있음을 보증함과 동시에 제3자가 그 發明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微生物寄託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微生物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特許明細書上으로 發明의 명확한 開示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微生物關聯發明의 경우에는 特許明細書에 아무리 그 發明의 실시 예를 잘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發明을 당업자가 동일하게 반복재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微生物寄託制度는?

우리나라의 경우 微生物 관련 發明을 特許出願하는 자에 대하여 그 微生物의 寄託을 法定化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9월 1일 施行된 特許法 第8條3項에 근거하여 同法施行令 1條 2項 및 施行規則 第31條의 2를 마련하면서 부터이다.

特許出願에 관련된 微生物은 特許廳長이 지정하는 寄託機關(KAIST, 韓國種菌協會)에 特許出願前까지 寄託하여야 하고 당해 特許出願이 公開되는 때에는 제분양을 하지 않고 해의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제3자가 자유롭게 분양받아 시험연구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하고 우리나라에 特許出願하는 外國人出願의 경우에는 그 微生物을 出願公開日 이전에 우리나라 寄託機關에 반드시 再寄託하도록 하고 있다.

再寄託은 어떤 경우에 하나?

國際寄託機關에 寄託되어 있는

微生物이 보관중 사멸하거나 또는 당해 微生物의 輸出入이 제한되어 분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再寄託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취지가 國際寄託機關으로부터 寄託者에게 통지되는데 寄託者는 原寄託(Original Deposit)과 동일한 微生物을 다시 寄託하게 된다.

이때 再寄託通知書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하여진 寄託의 경우에는 그 原寄託日을 소급 인정받게 된다.

再寄託은 原寄託을 행한 國際寄託機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輸出入制限등의 이유로 再寄託하게 되는 때에는 다른 國際寄託機關에 하게 된다.

再寄託은 어떻게 하나?

國際寄託機關으로부터 原寄託 微生物의 再寄託의 이유와 취지가 寄託者에게 통지되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原寄託微生物과 동일한 微生物을 다시 寄託하던 된다.

再寄託의 이유가 제3국에의 輸出入이 제한되어 하여야 할 경우라면 原寄託을 한 國際寄託機關이 아닌 다른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하던 된다. 이때 再寄託者는 再寄託申請書에 再寄託의 이유를 기재하고 再寄託하는 微生物이 原寄託微生物과 동일함을 진술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原寄託微生物의 수탁증(Receipt)과 생존진술서(Viability Statement) 사본을 첨부하게 된다.

한편 再寄託한 微生物을 수탁한 國際寄託機關은 再寄託者에게 새로운 수탁증과 생존진술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再寄託者는 이 경우 새로 발행된 수탁증에 기재된 寄託番號로 보정하고 수탁증 사본을 特許出願된 特許廳에 제출하면 된다.

Ⅲ. 國際寄託機關이란

國際寄託機關(IDA)이

되기 위한 要件은?

우리나라가 條約加入國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國際寄託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위를 취득할 수가 있다.

첫째, 영속적일 것

둘째,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갖추는 것

셋째, 공평하고 객관적일 것

넷째, 모든 寄託者에게 동일조건으로 이용 가능할 것

다섯째, 모든 또는 特定微生物을 수탁할 수 있으며 생존시험과 보관을 할 것

여섯째, 微生物 수탁증 및 생존진술서를 발행할 것

일곱째, 寄託微生物에 관한 秘密을 보장할 것

여덟째, 寄託微生物의 시료를 분양할 것

특히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寄託微生物을 오염되지 않도록 생존시켜 보존하는데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寄託된 微生物의 망실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國際寄託機關으로서의 지위를 취득을 위한 節次와 그 效力發生日은?

먼저 條約加入國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그 加入國 또는 정부간 工業所有權機構가 그 영토내에 있는 微生物寄託機關이 앞에서 설명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또 계속하여 충족한다는 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선언과 寄託機關에 관한 정

보를 WIPO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하므로써 國際寄託機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통고서에 기재할 寄託機關에 관한 정보로서는

—寄託機關의 명칭과 주소

—조약 제6조2항에 정한 寄託機關이 되기위한 요건과 그 기관의 법적지위, 과학적수준, 직원 및 시설등

—寄託 가능한 微生物의 종류

—기탁료, 생존진술서 발행료, 분양요금 등 부과할 각종 수수료

—寄託機關이 사용하는 1~2개의 言語

—寄託機關의 지위취득일자 이다.

國際寄託機關 지위의 취득일은 締約國의 통고에 따라 국제사무국 (IB)이 공표하는 날이 되지만 통고국이 통고서에 지정한 날짜가 공표일 보다 늦을 경우에는 통고국이 지정한 날이 된다.

※ 정부간 工業所有權機構는 2개 국이상에 의하여 지역특허를 부여하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條約第3條(1)(a)에 규정한 국제간 微生物寄託의 승인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예를들면 유럽特許廳(EPO)과 같은 機構를 말한다.

WIPO 사무총장이 승인한 國際寄託機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條約上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사무총장이 승인한 國際寄託機關은 최근 헝가리의 MING(영어 명칭: Hungarian National Collec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Microorganisms)가 1986. 6. 1자로 國際寄託機關의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1986년 12월말 현재 총 14개의 기관이 되었다. 각 國際寄託機關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ARS= Agricultural Research Culture Collection

(**NRRL**) 1815 North University

Street, Peoria, Illinois 61604-US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12301 Parklawn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2-US

FRI Fermentation Research Institute, Agen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1-3, Higashi 1-chome, Yatabe-machi Tsubuka-gun, Ibaraki-ken 305-JP

CBS Centraalbureau voor Schimmelcultures

Oosterstraat 1, Postbus 273, 3740 AG Baarn-NL

CNCM Collection nationale de cultures de micro-organismes

Institut Pasteur, 1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FR

DSM 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Grisebachstrasse 8, 3400 Göttingen-DE

NCYC National Collection of Yeast Cultures

Food Research Institute, Colney Lane, Norwich, Norfolk NR4 7UA-UK

NCIB National Collection of Industrial Bacteria

Torry Research Station, P. O. Box 31, 135 Abbey Road, Aberdeen AB9 8DG-UK

NCTC National Collection of Type Cultures

Central Public Health Laboratory, 175 Colindale Avenue, London NW9 5HT-UK

CCAP Culture Centre of Algae and Protozoa

36 Storey's Way, Cambridge CB3 0DT-UK

CMI Commonwealth Mycological Institute

Ferry Lane, Kew, Surrey-UK

IVI In Vitro International, Inc.

7885 Jackson Road, Ann Arbor, Michigan 48103-US

NCACC National Collection of Animal Cell Cultures,

Potton Down, Salisbury, Wiltshire, SP4 0JG-UK

MING(NCAIM) Mezőgazdasági és Ipari Mikroorganizmusok Magyar Nemzeti Gyűjteménye

(National Collec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Microorganisms)

Department of Microbiology University of Horticulture Somló út 14-16 H-1118 Budapest-HU

IV. 國際寄託機關의

利用 方法은

國際寄託機關에 寄託은

어떻게 하나?

PCT에 의한 國際出願 또는 外國出願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特許出願前에 發明에서 이용하고 있는 微生物을 먼저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하여야 하는데 다음 사항을 기재한 寄託申請書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微生物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寄託書類에 기재할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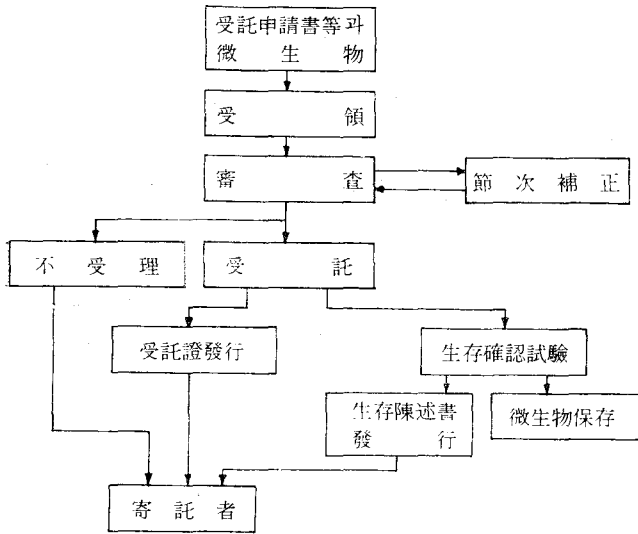
1. 寄託이 條約에 의거한다는 것과 條約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당해 微生物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2. 寄託者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微生物의 배양, 보존, 생존력 시험조건 및 여러 微生物이 혼합된 경우 그 조성과 각 微生物의 존재를 확인하는 최소한 한가지 방법

4. 寄託者가 부여한 당해 微生物의 동정에 필요한 기호, 부호등의 표시

微生物 寄託節次의 概要



5. 건강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微生物의 성질을 기재하고 또는 寄託者가 그러한 성질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모른다는 표시. 이에 부가하여

6. 寄託된 微生物의 분류학상의 위치 및 科學的 性質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國際寄託機關에서의 受託證의 교부는?

國際寄託機關은 寄託者에 대해 당해 國際寄託機關에 대해서 寄託된 微生物 또는 이송에 관한 微生物을 수령하며 당해 微生物을 수탁했음을 증명하는 수탁증을 교부한다. 수탁증양식은 총회가 지정한 언어로서 WIPO 사무총장에 의해서 그 양식이 작성되고 이를 국제서식(International Form)이라 한다.

로마문자 이외의 문자로 된 어휘를 수탁증에 기재할 경우에는 그 글자를 로마문자로 음역한 것을 병기해야 한다. 수탁증에는 國際寄託機關을 대표하는자 또는 대행자가 서명하게 된다.

國際寄託機關에서의 微生物의 保管은?

國際寄託機關은 寄託된 微生物이 생존가능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寄託후 30년간을 보관하여야 하며 최근의 분양신청이 이 기간 만료이전인 때에는 분양신청서 접수 후 최소한 5년을 더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國際寄託機關은 寄託된 微生物이 보관중 특히 사멸한 경우에는 寄託者에게 再寄託할 수 있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다.

國際寄託機關에 있어서 生存試驗 및 生存陳述書 發行義務는?

國際寄託機關은 寄託된 微生物에 대하여 生存試驗을 하여야 하는데 첫째, 규칙 第6條의 寄託 또는 규칙에 의한 寄託微生物이 이송되면 신속히 生存試驗을 하여야 한다. 둘째, 微生物의 종류와 보관조건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또는 技術上

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生存試驗을 행하여야 한다.

셋째, 寄託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生存試驗을 하여야 한다.

또 國際寄託機關은 寄託微生物의 生存陳述書를 寄託者에게 發行하여야 한다. 또한 寄託者의 청구서 또는 규칙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寄託된 微生物의 분양을 받는 特許廳 기타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寄託者 이외의 경우에도 微生物으로 분양시 또는 분양후에 언제든지 이를 발행한다.

생존진술서에는 微生物의 생존여부와 다음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國際寄託機關의 명칭 및 주소
- 寄託者의 이름 및 주소
- 微生物의 原寄託日, 再寄託日 또는 이송일
- 당해 國際寄託機關에 의해 부여된 수탁번호
- 生存試驗日
- 生存試驗이 이루어진 시험조건에 대한 정보(生存試驗結果가 부정적일 경우에 한해서 생존진술서는 申請者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할 微生物의 種類는?

수탁가능한 微生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는 부다페스트 條約하의 國際寄託機關이 공표한 微生物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세균, 플라즈미드, 방선균, 효모, 곰팡이, 담자균,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 동물·식물바이러스, 원생동물, 조류, 세포주, 하이브리도마, 온코진(암바이러스), 파아지, 식물조직배양물, 종자(Seed) 등이다.

여기서 플라즈미드, 하이브리도

마, 세포주, 바이러스, 종자등은 엄격한 의미로 生命體의 단위로서 微生物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特許節次上 플라즈미드는 숙주를 통하여 복제가 가능한 物質이므로 부다페스트條約下의 寄託 대상 微生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주는 엄격히 말하면 動·植物세포에서 나온 것이므로 微生物은 아니지만 動·植物의 기관보다 작은 단위인 세포단위이므로 이들도 特許節次上의 微生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당연히 寄託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다페스트條約下에서 微生物이라 하면 분류학상의 범위보다는 넓은 범주로 해석하며 寄託機關에 의해 수탁될 수 있는 모든 微生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國際寄託機關別로 수탁될 수 있는 微生物의 종류는 그 寄託機關의 통고에 따라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서 공포한 것이 된다.

國際寄託機關으로부터 微生物 분양을 받으려면?

國際寄託機關에 寄託된 微生物시료는 다음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 (1) 關係工業所有權廳(特許廳)
- (2) 寄託者 및 寄託者의 승낙을 받은 자
- (3) 법령상 시료를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자

(1) 關係工業所有權廳에서의 분양절차

縮約國의 特許廳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寄託微生物의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① 特許廳에 寄託微生物과 關係된 特許가 出願되어 있으며 그 出願의 대상이 그 微生物자체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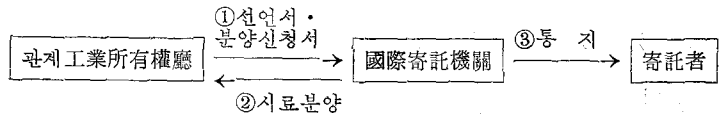
그 이용에 관한 때

② 寄託微生物 또는 그 이용 特許出願이 特許廳에 계류되고 있거나 特許가 허여된 때

③ 縮約國特許廳이 寄託된 微生物을 特許節次上 필요하고 그 절차에만 사용할 것 등이다.

縮約國의 特許廳이 微生物시료를

〈表 1〉 關係工業所有權廳에서의 분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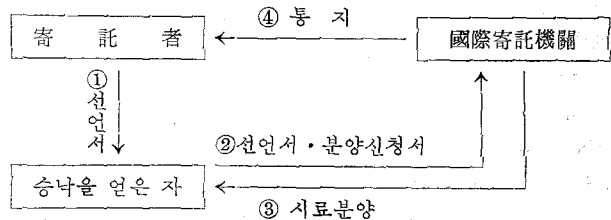


(2) 寄託者 및 寄託者의 승낙을 받은 자에의 분양절차

寄託者 본인이 스스로 寄託한 시료를 분양받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寄託者가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서를 보관중인 國際寄託機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寄託者의 승낙을 받은 자가

〈表 2〉 寄託者의 승낙을 얻은 자에의 분양절차



(3) 法令上 資格을 가진 자에의 분양절차

소위 제3자가 시료를 분양받는 경우로서 이는 두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경우는 表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微生物시료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가 縮約國의 법령상 資格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微生物과 關係된 特許出願이 되어 있는 工業所有權廳에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法令上資格이 있음을 증명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분양신청서와 함께 國際寄託機關에 제출하면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關係 工業所有權廳이 교

분양받으려고 하면 表 1에 보인 바와 같이 상기 내용의 요건을 선언한 선언서와 분양신청서를 그 微生物을 보관하고 있는 國際寄託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縮約國의 特許廳에 분양을 한 國際寄託機關은 그 취지를 寄託者에게 통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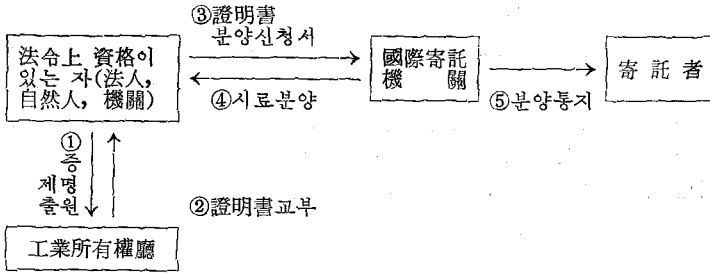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表 2에 보인 바와 같이 시료의 분양을 승낙한다고 하는 寄託者의 선언서와 분양신청서를 國際寄託機關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분양을 마친 國際寄託機關은 그 취지를 寄託者에게 통지하게 된다.

부하는 증명서의 내용 즉 법령상 微生物시료를 교부받을 자격요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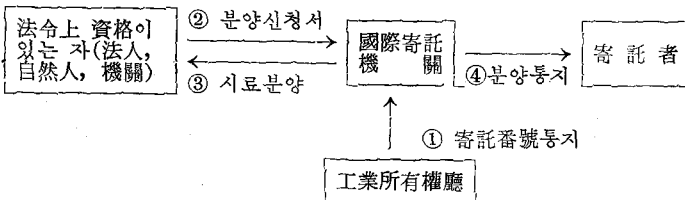
- ① 그 工業所有權廳에 寄託微生物에 關係된 特許出願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 ② 寄託微生物에 關係된 特許出願이 公표(公開 또는 公告 및 特許)되어 있어야 하며
- ③ 분양신청자가 그 工業所有權廳의 국내법령상 분양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등이며 이들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特許出願이 公표된후에 교부되는 것이지만 公표전이라 할지라도 법령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부될 수 있다.

〈表 3〉 締約國의 法令上 資格이 있는 者에의 分讓 절차(제1의 경우)



〈表 4〉 締約國의 法令上 資格이 있는 者에의 分讓 절차(제2의 경우)



두번째 경우는 表 4에 보인 바와 같이 締約國의 工業所有權廳이 微生物과 관계된 特許出願을 公표(特許)한 때에 그 寄託微生物의 수탁번호를 國際寄託機關에 수시로 통지해 두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微生物을 分讓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證明서를 교부받지 않고 직접 國際寄託機關에 微生物분양신청서만을 제출하여 그 시료를 분양받게 된다.

條約加入國이 되기 위한 要件은?

부다페스트 條約의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파리協約의 同盟國이어야 하며
 둘째, 부다페스트條約에 서명한 나라는 그 후 비준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寄託하거나, 또는 비서명국의 경우에는 加入書를 WIPO 사무총장에게 寄託함으로써 締約國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5월 4

V. 부다페스트條約 加入의 節次는

일 파리協約에 加入하였으므로 加入書를 WIPO 사무총장에게 寄託하던 條約이 정한 절차에 따라 加入國이 되는 것이다.

條約加入의 効力發生日은?

파리協約의 同盟國이 비준서 또는 加入書를 WIPO 사무총장에게 寄託한 후 3개월이 되면 그 効力이 발생한다.

다만 條約의 비준서 또는 加入書에 전술한 3개월보다 늦은 날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에 効力이 발생한다.

條約을 脫退할 경우와 그 効力의 發生日은?

條約加入國은 WIPO 사무총장앞으로 통고서를 보냄으로써 條約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同 條約의 加入國이 된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탈퇴는 WIPO 사무총장이 탈퇴의 통고를 수령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効力을 발생한다.

條約의 탈퇴에 따라 條約加入國內에 승인되어 있는 國際寄託機關의 지위는 加入國의 통고를 WIPO 사무총장이 수령한 후 1년으로 中止된다. <○>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어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의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